

의안번호	제 107 호
의결 년 월 일	2007. 7 . 25 .

의결사항
원안가결

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보 은 군 수
제출년월일	2007 . 7 . 20 .

기획감사실장 심사필

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7. 7. 20 .
제 출 자 : 보 은 군 수
(소관부서 :)

1. 제안이유

-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의 위탁 대상을 개인까지 확대하고 개인사물함의 이용료 규정을 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운영의 위탁대상에 개인을 추가(20 1)
 - , → , , 개인
- 개인사물함 이용료 신설(2)
 - 5,000 , 3,000 ↓

3. 신·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

4. 근거법령 (또는 참고자료)

-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 조
- 보은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: 따로붙임

보은군 조례 제 호

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5호중 “행사”를 “경우”로 한다.

제20조제1항중 “법인 또는 단체에게”를 “법인, 단체 또는 개인에게”로 한다

별표2중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2. 이용료(회원권)

시 설 별	기 준	이 용 료 (단위 : 원)				회원권 (월)	비 고	
		개 인		단 체				
		평 일	공휴일	평 일	공휴일			
국민 체육 센터	체육관	어 른	2,000	2,500	1,500	2,000	※ 이용료의 할인 ◦ 회원권 할인 - 1년회원: 20% - 6월회원: 10% ◦ 경로대상 : 어린이 이용료 적용	
		군 경 청소년 어린이	1,500	2,000	1,000	1,500		
	실 내 수영장	어 른	3,000		2,500			50,000
		군 경 청소년	2,500		2,000			40,000
		어린이	2,000		1,500			30,000
		유 아	1,000		700			15,000
		개 인 사물함						대5,000 소3,000
	헬스장	어 른	2,500		2,000			35,000
		군 경 청소년 어린이	2,000		1,500			30,000
	에 어 로빅장	어 른	1,500		1,000			25,000
		군 경 청소년 어린이	1,200		700			20,000

- ※ 1. 이용자의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
- 2. 초과 이용시 매 시간당 해당이용료의 50%를 가산 징수한다.
- 3.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.

[별표2]

2. 이용료(회원권)

< 현 행 >

시 설 별	기 준	이 용 료 (단위 : 원)				회원권 (월)	비 고	
		개 인		단 체				
		평 일	공휴일	평 일	공휴일			
국민 체육 센터	체육관	어 른	2,000	2,500	1,500	2,000	※ 이용료의 할인 ◦ 회원권 할인 -1년회원: 20% -6월회원: 10% ◦ 기타 할인 (어린이 이용료 적용) -국가유공자 -장애인 -경로대상	
		군 경 청소년 어린이	1,500	2,000	1,000	1,500		
	실 내 수영장	어 른	3,000		2,500			50,000
		군 경 청소년	2,500		2,000			40,000
		어린이	2,000		1,500			30,000
		유 아	1,000		700			15,000
	헬스장	어 른	2,500		2,000			35,000
		군 경 청소년 어린이	2,000		1,500			30,000
	에 어 로빅장	어 른	1,500		1,000			25,000
		군 경 청소년 어린이	1,200		700			20,000

- ※ 1. 이용자의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.
- 2. 초과 이용 시 매 시간당 해당 이용료의 50%를 가산 징수한다.

2. 이용료(회원권)

< 변경안 >

시 설 별	기 준	이 용 료 (단위 : 원)				회원권 (월)	비 고	
		개 인		단 체				
		평 일	공휴일	평 일	공휴일			
국민 체육 센터	체육관	어 른	2,000	2,500	1,500	2,000	※ 이용료의 할인 ◦ 회원권 할인 - 1년회원: 20% - 6월회원: 10% ◦ 경로대상 : 어린이 이용료 적용	
		군 경 청소년 어린이	1,500	2,000	1,000	1,500		
	실 내 수영장	어 른	3,000		2,500			50,000
		군 경 청소년	2,500		2,000			40,000
		어린이	2,000		1,500			30,000
		유 아	1,000		700			15,000
		개 인 사물함						대5,000 소3,000
		헬스장	어 른	2,500		2,000		35,000
		군 경 청소년 어린이	2,000		1,500			30,000
	에 어 로빅장	어 른	1,500		1,000			25,000
		군 경 청소년 어린이	1,200		700			20,000

- ※ 1. 이용자의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
 2. 초과 이용시 매 시간당 해당이용료의 50%를 가산 징수한다.
 3.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.

[관계법령]

부가가치세법

제12조 (면세)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[개정 80·12·13, 88·12·26, 93·12·31, 98·12·28, 99·12·28, 2001. 4.7. 2003.05.29.법6905호, 2003.12.30, 2006.12.30]

17.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
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제38조 (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)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것"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. [개정 2006.2.9, 2007.2.28]

1. 「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」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「우편법」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
2. 「철도건설법」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
- 3. 부동산 임대업, 도·소매업, 음식·숙박업, 골프장·스키장운영업,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.** 다만, 국방부 또는 「국군조직법」에 따른 국군이 「군인사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, 「군무원인사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.

부칙[2006.2.9. 제19330호]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, 제38조제3호 및 제64조제3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참고자료]

보은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

- 심의일자 : 2007. 5. 7(월) 15:00~
- 심의장소 : 본관 2층 소회의실
- 심의인원 : 보은군 물가대책위원회 21명중 18명
- 심의결과 : 조정가결
- 심의내용 : 보은군 체육시설사용료 조정(안) 심의
- 주요내용 :
 - 자치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07.1.1일부터 시행하여야 함.
 - 보은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 체육시설의 사용료 중 이용료에 부가가치세를 추가하고 개인사물함 기준 신설로 이용료의 조정 필요.
- 심의결과 : 조정가결
 - 심의참여 인원 : 18명
 - 원안가결 : 0, 원안부결 : 0명, 조정가결 : 18명
- 심의결과 내용 :
 - 현재 체육시설의 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사용료로 징수
요약하면 현재 사용료에 대해 주민들에게 부가가치세 추가 징수
는 없음.
 - 개인사물함 신설 요금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사용료로 징수.